

'25년 상반기

#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최신 동향

2025. 9.



관세청  
Korea Customs Service  
원산지검증과

# CONTENTS

- I.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통계 ..... 1**
  - 가. 전체 검증요청 현황 ..... 1
  - 나. 협정·유형별 검증요청 현황 ..... 2
  - 다. 검증요청 사유 ..... 2
  
- II. 주요 협정별 검증동향 ..... 3**
  - 가. 한-튀르키예 FTA ..... 3
  - 나. 한-EU FTA ..... 4
  - 다. 한-중국 FTA ..... 5
  - 라. 한-아세안 FTA ..... 6
  - 마. 한-인도 CEPA ..... 7
  - 바. 기타 FTA (한-영국, 한-베트남 등) ..... 7
  - 사. 비특혜 원산지검증 ..... 8
  
- III. 미국 수출물품 자체 검증 동향 ..... 9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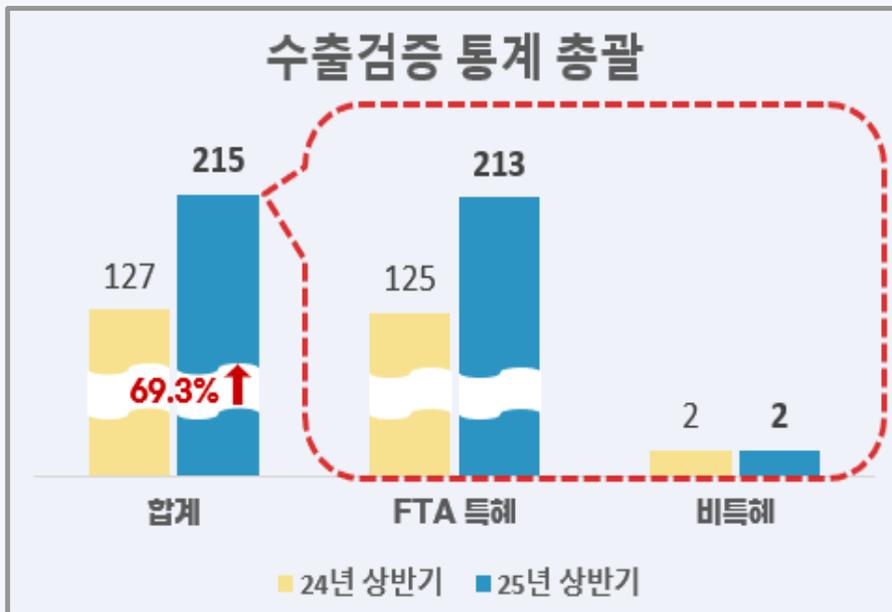
## ['25년 상반기]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최신 동향

- ✓ 본 자료의 「I.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통계」, 「II. 주요 협정별 검증동향」 내용은 수입국 관세당국이 우리나라에 원산지검증을 요청한 것에 한정된 정보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I.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통계

#### 가 전체 검증요청 현황

(단위 : 업체수)



- **[FTA 검증]** 2025년도 상반기 우리나라에서 FTA를 활용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해 협정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69.3% 증가하였습니다. 이는 튀르키예로부터의 검증 요청이 2025년 급격히 증가함에 따른 결과입니다.
- **[비특혜 검증]** 2025년도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수입국의 비특혜 검증요청 건수는 전년 대비 동일하였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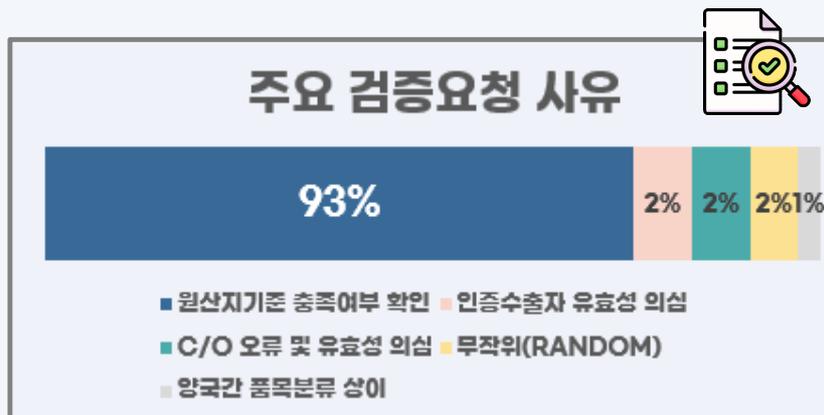
## 나 협정·유형별 검증요청 현황

(단위 : 업체수)

구 분		'21년	'22년	'23년	'24. 1~6월	'25. 1~6월	전년 대비
FTA 특혜 등	튀르키예	492	229	198	69	166	140.6%
	EU	50	71	68	33	31	▲ 6.1%
	중국	7	6	12	1	7	600.0%
	아세안	14	23	16	6	4	▲ 33.3%
	인도	147	30	18	8	2	▲ 75.0%
	기타	4	4	6	8	5	▲ 62.5%
비특혜		16	6	5	2	2	0%
합 계		730	369	323	127	215	69.3%

- **[FTA 검증]** 2025년 상반기 FTA 원산지검증은 한-튀르키예 / 한-EU / 한-중국 FTA와 관련하여 상대국의 검증 요청이 집중되었습니다. 특히 튀르키예와 중국의 원산지검증 요청 건수가 많이 증가하였으며, 나머지 국가의 검증 건수는 감소하였습니다.

## 다 검증요청 사유



- **[요청사유]** 2025년 상반기에는 “원산지기준 충족여부 확인”을 이유로 상대국이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.

✓ 각 FTA 특성에 따라 협정별로 원산지검증 요청 사유에 차이가 있으므로, 검증 대응 시 「표. 주요 협정별 검증동향」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## II. 주요 협정별 검증동향

### 가 한-튀르키예 FTA



- **[현황]** 2025년도 기준, 발효된 협정 중 한-튀르키예 FTA에 따른 수출검증 요청이 가장 많았습니다. (전체 요청건수 중 약 77% 차지)
- **[품목]** 섬유류(직물 등) > 화학공업제품(화장품 등) > 기계류(중장비 등)
- **[요청사유]** 튀르키예 당국은 ① 원산지신고서의 진위여부 확인 및 ②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.

#### ○ [주요 사례]

□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하는 물품에 대해 원산지신고서 발행

→ 한-튀르키예 FTA 규정상 면직물 제품은 ‘역내산 실’을 사용하여 생산되어야만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, 수출업체 A사는 역외산 원사를 사용하거나, 국내 원사 공급처 폐업 등으로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원재료를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생산된 제품을 튀르키예로 수출하면서 원산지신고서를 한국산으로 발행

#### ○ [튀르키예 수출 시 유의사항]

- ✓ 튀르키예로부터 대부분 한국산 섬유류 제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. 튀르키예로 섬유류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수출물품이 역외산 원재료를 사용했는지 체크하고, 원산지신고서 작성 시 해당 수출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제대로 확인하여 원산지신고서를 부정하게 발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.



## 나 한-EU FTA

- **[현황]** 2025년 상반기에는 독일·스페인·이탈리아 등으로부터의 요청 건수가 많았으며, 27개 회원국 중 13개 국가로부터 원산지 검증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. (전체 요청건수 중 약 14% 차지)
- **[품목]** 전자기기(의료용기기 등)·섬유류(편직의류 등) > 화학제품(수지 등)
- **[요청사유]** EU 각국의 관세당국은 ①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와 ② 한국 수출자의 인증수출자 지위 유효여부 확인을 위해 검증 요청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.
- **[주요 사례]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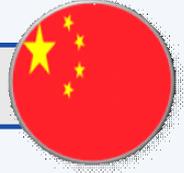
### □ 미인증수출자의 부적정 원산지신고서 발행

- 미인증수출자는 수출물품 가격이 6천유로를 초과하지 않으면 C/O 작성이 가능하나, 원산지 기준 충족 확인 및 증빙서류 보관은 하여야 합니다. 그러나 미인증수출자 C社は 수출물품(6천유로 미만)의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확인 및 증빙서류 보관 없이 C/O를 부적정하게 발행
- 국내 수출업체 D社は 미인증수출자로서 원산지신고서 상 인증수출자 번호 대신 사업자번호를 기재하고, 수기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을 하는 등 원산지신고서를 부적정하게 발급

### ○ [EU 수출 시 유의사항]

- ✓ EU 국가는 ‘인증수출자 지위 유효여부’를 중점 검토하고 있으므로, 원산지신고서 발행 전 자사의 인증수출자 지위 보유 여부를 확인 하시고, 반드시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.

## 다 한-중국 FTA



- **[현황]** 2025년 상반기 중국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 요청건수가 전년동기 대비 증가하였습니다.(1건 → 7건)
- **[품목]** 기계류(밸브 등) > 금속제품(비철금속제품 등) > 화학제품
- **[요청사유]** 중국 관세당국은 ① 협정상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으며, ② 원산지증명서와 중국 수입신고서 내역 간 품목분류 불일치를 이유로 검증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.

### ○ [주요 사례]

- 원산지 입증서류[원산지(포괄)확인서] 없이 원산지 증명서 발급  
→ 원재료 구매부터 최종 수출까지 여러 협력사를 거쳐 생산되는 수출물품으로서 일부 중간 거래 단계에서 주요 원재료의 원산지(포괄)확인서가 없어 원산지 기준 충족여부 확인이 불가함에도 원산지 증명서 부적정하게 발급

### ○ [중국 수출 시 유의사항]

- ✓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한-중 FTA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중국 관세당국의 검증 요청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수출 시 원산지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.
- ✓ 더불어 원산지증명서와 선하증권 상 내용 불일치, 오탈자 등을 이유로 중국 당국에서 원산지검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니 C/O 발급 시 기재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 라 한-아세안 FTA



- **[현황]** 2025년 상반기 아세안 관세당국의 검증요청은 총 10개 국가 중 태국·베트남 관세당국으로부터만 요청이 왔습니다.
- **[품목]** 화학공업제품 (화장품 등) > 알루미늄제품 > 플라스틱제품
- **[요청사유]** 아세안 회원국은 ① 원산지증명서의 내용 기재 오류 또는 ②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 등을 이유로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
- **[주요 사례]**

📎

□ AK원산지증명서 상 제3국 상업송장 정보 누락 발급

→ 상업송장이 제3국에 소재하는 회사에서 발급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제13란에 제3국 송장을 표시하고, 송장 발행 회사 정보를 제7란에 기재하여야 하나 발급신청 시 누락 ⇒ C/O 정정발급 후 재 송부

### ※ [참고 - 한-아세안 FTA 활용 시 제3국 송장 관련 규정]

한-아세안 FTA 부속서 3의 부록 1  
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개정안 제21조

1. 상업송장이 제3국에 소재하는 회사 또는 그 회사의 계정으로 수출자에 의하여 발급된 경우에도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할 수 있다. 다만, 그 상품이 부속서 3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2. 상품의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에 “제3국 발행송장 대상”임을 명시하고 송장을 발행하는 회사의 명칭 및 국적과 같은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.



## 마 한-인도 CEPA

- **[현황]** 인도 당국의 검증요청 건수는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, 2025년 상반기에도 전년대비 감소하였습니다. (8건 → 2건)
- **[품목]** 플라스틱제품 ) 전자전기제품 (냉장고)
- **[요청사유]** 인도 관세당국은 주로 우리나라 물품의 원산지결정 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
- **[인도 수출 시 유의사항]**
  - ✓ 인도 당국은 ‘조합기준’ 중 ‘부가가치기준’ 충족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경향이 있으므로, 인도 수출 시 부가가치 계산 관련 원산지증빙서류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

## 바 기타 FTA (한-영국, 한-베트남)

- **[현황]** 상위 5개 협정 외에는 한-영국 FTA / 한-베트남 FTA와 관련하여 수출검증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.
- **[품목]** 섬유류(기타섬유제품) · 플라스틱제품(필름류) 등
- **[요청사유]** 수출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이유로 검증을 요청하였습니다.
- **[수출 시 유의사항]**
  - ✓ 한-영국 FTA / 한-베트남 FTA와 관련해 원산지검증 요청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므로, 해당 협정을 활용하여 수출하는 기업은 FTA 원산지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

## 사 비특혜 원산지검증

- **[현황]** 2025년 상반기는 전년동기 대비 동일한 수준이었으며, 튀르키예로부터만 **비특혜 원산지검증** 요청이 왔습니다.
- **[품목]** **섬유류**(단섬유직물·편직물)
- **[요청사유]** 수출물품의 **한국산 여부 확인**을 위해 요청하였습니다.
- **[수출 시 유의사항]**
  - ✓ 튀르키예를 비롯하여 EU 등에서 꾸준히 비특혜 원산지검증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**사전에 각 수입국의 비특혜 원산지 기준을 면밀히 확인**하시기 바랍니다.
  - ✓ 아울러 우리나라 「**대외무역법**」으로 정하는 수출물품 원산지기준 보다 수입국의 원산지기준이 더욱 엄격한 경우가 있으므로, **사전에 수입국의 비특혜 원산지기준을 면밀히 확인**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**[참고 - 수출물품의 비특혜 원산지 판정 기준 관련 수입국 원산지 판정 기준과 다른 경우 관련 규정 발취]**

□ **대외무역법 시행령**

제61조(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)

① ~ ② (생략)

③ 법 제34조에 따른 수출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여 판정하되, 그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기준이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다.

## Ⅲ. 미국 수출물품 자체 검증 동향



### 한-미 FTA 관련 원산지 점검 결과 공유



- **[배경]** 미국의 원산지 조사 강화에 대비하여 대미수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, 국산 수출물품의 원산지 신인도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 위험성이 높은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한-미 FTA 규정 등 준수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.
- **[점검 결과]** 대부분 수출업체가 적정하게 한-미 FTA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, 일부 수출자의 경우 FTA 규정 및 대외무역법 위반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.
- **[주요 사례]** 주요 위반 사례 유형

- ① 중국산 완성품을 수입하여 원상태 그대로 수출하면서 한국산으로 한-미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
- ② 중국산 원재료를 수입하여 조립 등 단순 가공으로 원산지 기준이 불충족함에도 한국산으로 한-미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
- ③ FTA 원산지 증명서는 발급하지 않았으나, 수출물품에 원산지 허위 표시 및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 발급으로 대외무역법 위반

- **[미국 수출 시 유의사항]**

- ✓ 2025년 하반기에도 대미 수출물품을 대상으로 원산지 점검을 시행할 예정입니다. 원산지 증명서를 부적정하게 발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산지 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고, 잘못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가 있다면 수정 통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.